

##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활동에 대한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별도 정한 부담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사업, 임대료감면율등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 제19조제7항에 의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지원에 있어서는 별도로 정한 도 및 시·군 부담 기준에 의한다.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되 시장·군수는 별도 정한 부담기준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안) 제4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원안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지원금의 대상, 지원규모, 지원비율, 지원방법 등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원안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통상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관련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실에서는 령 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 제12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원안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에 따른 민원업무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령 제23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무는 령 제23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적용한다.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안) 제13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

(안) 제15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원안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6조를 삭제한다.

(안) 제17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1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원안의 제18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도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공유재산조례에 의한다.

③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투자유치활동경비지원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안) 제19조를 제10조로 한다

(안) 제2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원안의 제20조) 제3항 중 “지방세법”을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안) 제21조를 제12조로 한다.